

# 2018년 미남미녀프로젝트 3기 운영 용역 입찰공고 과업지시서

## I 사업 안내

### 1. 사업 개요

가. 사업명 : 2018년 미남미녀프로젝트 3기 운영

나. 사업목적 : 중소 의류 제조업체의 분야별 전문 인력 부족 및 고령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창업가를 양성 하여 국내 의류 제조 산업 활성화

다. 사업기간 : 계약체결일 ~ 2018년 12월 31일

라. 사업비 : 일금일억이천만원(120,000,000원, VAT 포함)

마. 낙찰액 : 일금일억일천구백구십만원(119,900,000원, VAT 포함)

바. 계약액 : 일금일억구백만원(109,000,000원, 면세사업자의 경우 VAT 차감)

#### 사. 사업자 선정방식

1) 입찰방식 : 제한경쟁입찰

2) 기술평가(정량, 정성평가)와 가격평가로 나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

#### 아. 주요 사업내용 및 범위

##### 1)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
- 청년 창업을 고려한 실무중심의 의류제작 기술 및 경영 등의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
  -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마케팅 등 예비창업자 지원 과정
  - 교육수준 미흡한 교육생들에게는 보충수업 지원
- 브랜드 창업 개발에 도움이 되는 특강 프로그램 기획운영
  - 패션 산업 트렌트를 반영한 브랜드 및 상품 아이디어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화된 교육 기획
  - 패션 창업 실무자를 섭외하여 매출 극대화 경영방식 및 현장 업무 강의 기획
  - 일반시민 대상 워크샵 대신 미미 교육생 대상으로 한 해외 특강으로 대체

소 속 : 패션문화본부 의류산업팀  
담당 : 오진실 선임  
전화 : 02-2088-1491

이메일 : ohoh0513@seouldesign.or.kr

발주기관 : 서울디자인재단  
홈페이지 : [www.seouldesign.or.kr](http://www.seouldesign.or.kr)



## 2) 미남미녀프로젝트 3기 교육생 선발 및 심사

- 심사위원 섭외
  - 3명 이상 (공신력 있는 심사가 가능한 브랜드 창업 및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위원)

- 교육생 모집 홍보 및 심사 지원

## 3) 미미마켓 기획 및 운영

- 판매 및 유통 과정을 배울 수 있는 마켓 기획
  - 판매 장소 섭외 및 참여 브랜드 홍보 지원
  - 참여 브랜드 상품 제작 비용 일부 지원 (대략 1인당 90만원)

## 4) 미남미녀프로젝트 3기 교육생 우수생 선발을 위한 품평회 진행

- 청년공방 입주 및 창작스튜디오 가점 혜택 수여받을 우수생 선발 심사
  - 심사위원 섭외  
(공신력 있는 심사가 가능한 브랜드 창업 및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위원)

## 5) 기타

- 교육 프로그램 기획·운영 과정에서 당초 예정된 일시·참여대상 등 변동이 생길 경우, 관계기관과 협의 후 과업 수행
- 주간·월간·최종결과와 관련 해당 사안의 기간에 협의 진행 및 관련 사항 공유
- 월별 활동보고서 보고 (프로그램 진행 상황 및 결과) 월 1회
- 주간보고 (프로그램 진행 상황 및 결과) 주 1회
- 결과보고 : 사업 종료 후 평가회의 1회 진행
- 최종 제출물 (월별 활동보고서 및 사업 진행에 따른 자료) 일체, 용역 정산 보고서
  - 수료생 현황 보고서(브랜드명, 생산품목, 사업자등록증 여부 및 브랜드 소득현황, 팝업스토어 및 각종 행사 참여 결과보고)
  - 교육 운영 용역관련 정산보고서 일체

## II 과업내용

### 1. 세부과업내용

#### 가. 교육생 선발

##### 1) 교육생 선발기준

- 1순위 : 사업자 등록증 없는 청년 예비창업자
- 2순위 : 사업자 등록 2년 이내의 청년 창업자
  - ※ 청년 창업자 : 공고일 기준 만 19세 ~ 39세 이하 청년  
(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9조 4항의 2. 참조)

##### 2) 심사방법

- 1차 서류심사 : 적격성 심사 후, 적격자에 한해 2차 심사 기회 부여
  - 교육생 선발기준 (이력서, 신분증 등)
  - 봉제기술 및 패턴 제작 기술력 확인 ( 자격증, 활동내역 등)  
※봉제기술 교육 60시간 이수자 가산점
- 2차 대면심사 : 프레젠테이션 진행 후 최종참가자 선정
  - 창업 아이디어 및 브랜드 성장가능성 심사
  - 대면심사를 통한 창업의지 및 열정 등 태도 심사
- 심사표 :

심사항목		창업반	
		평가사항	배점
1차	서류심사	적격성 심사 (사업자등록증 등록여부, 연령, 의류제작관련 자격증 및 활동내역)	
2차	대면심사	독창성	30
		경영마인드	30
		성장가능성	20
		창업의지 및 열정	20
합계		100	

### 3) 운영내용

#### □ 프로그램(안)

청년제작자 양성을 위한 1인 패션기업 창업과정		
주차	주제	세부내용
1~5주	브랜드 매니지먼트	-패션산업 분석 및 브랜딩 전략 개발 -브랜드 기획서 입안 -상표출원 상담 및 특강
6~10주	디자인 기획 및 컬렉션 완성	-브랜드 상품 디자인 작업지시서 설명 및 전체 컬렉션 완성
11~13주	샘플 제작 및 관리	-패턴제작 및 봉제 -샘플 자체 제작 실무 수업
14~15주	마케팅 전략	-물량 비용 계획 수립 -품목별 가격구성 계획
16~22주	사업계획서 완성	- 1대1 사업 계획서 컨설팅 및 완성 - 사업자등록증 발급

#### □ 워크샵 및 특강 개최

- 기 간 : 2018년 6월 ~ 11월 (월 2회 이상)
- 내 용 : 국내외 패션 실무자(샵매니저, 패션쇼핑몰 CEO, 패션에디터 등)  
국내 의류제조 현장교육 및 의류제조업체 연계 간담회

#### □ 미미마켓 및 팝업스토어 활동지원

- 기 간 : 2018년 9 - 11월 (연 2회) 개최
- 내 용 : 샘플제작비 일인당 90만원 지원

#### □ 서울디자인재단 권역별 타 패션지원센터와의 교육 사업 연계(안)

구분	중랑패션지원센터	동대문 패션지원센터	서북권 비즈니스 쇼룸
프로그램 연계	· 재단실 자동재단 장비 교육 (CAD/CAM장비)	· 특수봉제장비 교육 연계	· 샘플실 및 봉제공장 현장 실습 교육

※교육 사업 연계(안)은 추후에 변동 될 수 있는 사항임.

### 4) 기타사항

-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재단의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, 삭제,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, 과업수행자는 재단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
- 계약대상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보안하여야 함
- 선정 업체는 본 과업에 전담직원을 투입 및 상주해야하며,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

은 한 사업초기부터 계약 완료일까지 바꾸지 않고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
○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허나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기본사항은 계약 당사자 공동소유로 하며, 운영 및 소유권 관련 하여서는 재)서울디자인재단에 귀속한다.

※ '지식재산권 귀속' 관련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함.

-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,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,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.

## 2. 과업수행지침

### 1) 과업 준수사항

- 계약상대자는 기획 및 교육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.
- 제안내용의 구체화를 위한 세부 교육 프로그램 추진계획과 일정을 제시한다.
-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및 기획 관련 논의한다.
-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 수행 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.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상호협의 조정할 수 있다.
-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.
-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재단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.

### 2) 과업의 효력

-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사항의 이행 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다만, 민·형사상의 사건·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·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·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.
-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행사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.
  -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
  -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
  - 재단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
  -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히 늦어질 때

- 과업수행과정 중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때
-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하거나 중대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
- 재단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
-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과업 수행 계획에 의한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용역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당초 제안서 제출 시 업체 소개내용, 참여인력 경력, 사업실적 이행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
-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

### 3) 착수보고 지침

#### 1. 착수보고 지침

- 착수보고 시 내용 구체화 및 교육 참가 협력일정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
- 사업추진 단계별 주요 발생업무를 구체화하고, 해당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단계별 인력투입 및 교육운영 계획을 제시한다.
- 교육 프로그램 기획 인력 인건비 교육생 수급 방안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예산운영 계획 수립한다
-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방이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

#### 2. 착수보고 시 업무분장 및 역할 명시

- 사업의 질적, 안정적 관리를 보완 및 통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에듀케이터와 대표사(공동수급 시 협력사)의 역할 및 추진체계를 수립한다.
- 교육의 실행부분은 자체 전문 인력(조직)보유 또는 현지 전문 업체와 별도 컨소시엄 및 파트너십을 통해 교육수행의 전문성 확보 계획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.
- 교육의 실행부분은 자체 전문 인력(조직)보유 또는 현지 전문 업체와 별도 컨소시엄 및 파트너십을 통해 교육수행의 전문성 확보 계획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.
- 사업의 활성화와 취/창업을 위해 사업 수행 시 재단의 요청에 의한 디자이너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회 또는 간담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#### 3. 수행환경

- 본 사업의 목표 및 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행한다.
- 본 사업은 국내 중소 의류 제조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근로환경의 인식개선 및 청년들의 취창업 도모를 위해 추진한다.
- 본 협약서 협약내용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행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진행한다.
-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제출 사항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

대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-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, 협상서, 과업지시서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.
- 본 사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,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,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.
- 인쇄 및 홍보 등은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제작 진행한다.
- 각종 진행과정에서 전문가가 책임지고 추진하며, 작업 전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진행하고, 작업 추진시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 시 책임당사자에게 있다.
- 본 사업 제안과 관련한 자료(사진, 데이터, 그림 등)의 확보(촬영, 구매, 임대, 지급 등) 및 제안내용 등의 특허권, 저작권 등이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위탁업체가 해결하며, 본 계약 수행 중에 계약 당사자 간에 발행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.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.

#### 4. 기타

- 본 과업지시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.
-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분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, 중간업무를 서울디자인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보고, 제출하여야 하며, 이때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시와 함께 협력해 필요시 내용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, 수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상대상자는 서울디자인재단의 계약수행 과정에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·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.
- 모든 저작권, 소유권은 발주처(서울디자인재단)에게 있다.